

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단가계약 계약특수조건

본 계약은 전북대학교병원(이하 “병원”이라 한다)과 계약상대자 간의 「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단가계약」 체결에 있어 폐기물관리법의 제 규정에 따라 위탁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의거 이를 준수한다.

제1조(목적) 본 계약은 병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거 처리하기 위해 위탁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생활폐기물 종류 및 처리대상) 본 계약의 위탁처리 대상이 되는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활폐기물로 한다.

제3조(계약기간)

- ① 계약기간은 2026. 12. 1. ~ 2027. 11. 30.(1년)까지로 한다.
-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단, 2호의 경우 계약기간을 2개월 이내로 제한한다.
 1. 천재·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
 2. 물품 구매를 위한 신규 입찰 진행 시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

제4조(계약발생량 및 적용단가)

- ① 계약금액은 일금(₩000원/1년, 부가가치세 포함)으로 한다.

품명	추정발생량	계약단가	계약금액
생활폐기물	640ton	000원 (부가가치세 포함)	000원 (부가가치세 포함)

- ② 계약수량은 예정발생량으로 병원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,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ton당 위탁처리 단가는 종류에 불문하고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.
- ④ 계약된 ton당 단가는 수집·운반 단가와 처리 단가를 구분하여 산정한다.

제5조(위탁처리비 대금지급)

- ① 위탁처리비는 실제 위탁처리량에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.
- ②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담당직원 검수를 필한 후 반출하여 적법하게 운송 및 처리한 후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하고, 대금은 병원지급기준일(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1항에 의거하여 청구일로부터 10일 내)에 공동수급체 대표사에게 지급한다.

제6조(처리 및 이행의무)

- ① 계약상대자는 병원과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 계약을 체결한 후, 병원과 계약상대자 및 중간처리업체와의 계약 성립을 확인 할 수 있는 공동이행계약서와 공동 이행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있어 과업지시서 준수를 원칙으로 하며, 부득이한 경우 병원 담당자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.
- ③ 생활폐기물의 위탁처리량은 병원의 확인된 증량으로 한다.
- ④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기타 제반법규를 준수해야 하며, 불법처리(노천 및 불법 매립)등 법규 위반으로 인한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에게 있다.
- ⑤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생활폐기물 운반 작업 중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및 기물 파손 시 즉시 관계직원에게 알려야 하며, 이에 대한 모든 책임 및 배상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.
- ⑥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배출한 생활폐기물의 운반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병원의 사전 허락 없이 타인에게 재 위탁할 수 없다.
- ⑦ 계약상대자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주 3회 이상 수거를 원칙으로 처리해야 하며, 조정이 필요할 경우 병원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.

제7조(책임 및 배상)

-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제반법규를 위반하여 운반 및 처리한 경우 민·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.
- ② 병원은 계약상대자가 수거일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불확실하게 처리하여 병원에 불이익이 발생했을 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8조(계약의 해지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- ① 계약상대자가 의무이행을 태만하게 하거나 병원의 시정요구를 불이행한 경우

- ②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사실이 발견 되었을 시
- ③ 천재지변이나 계약상대자의 행위능력에 중대한 변동으로 불가항력 사유 발생시
- ④ 기타 병원에게 부득이한 형편이 있을 시

제9조(권리 및 의무의 양도금지) 계약상대는 병원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제10조(기타사항)

- ① 생활폐기물 운반·수집업체가 계약상대자로서 입찰등록을 하는 경우,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서에 공동으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.
-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일반 상 관례에 준하고 계약에 관한 소송은 병원이 소재하는 관할법원으로 한다.
- ③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도 본 계약의 일부가 된다.